

# 사단법인 한국동남아학회 정관

##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동남아학회(KASEAS: Kor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Studies, 이하 본 법인)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본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또는 수도권 지역에 두고, 필요에 따라 시·도별 지부와 해외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 법인은 동남아시아 지역연구의 활성화와 확산, 외교통상정책의 개발과 제안, 민간 교류 및 협력의 확대를 통하여 동남아시아 지역연구 및 공공외교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동남아시아 지역연구와 관련된 자료수집 및 조사, 연구, 발표, 보급사업
2. 동남아시아 관련 외교통상정책 개발 및 제안사업
3. 동남아시아 관련 국내외 학술·민간단체와 공동협력 및 교류사업
4. 동남아시아 관련 국내외 지역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사업
5. 동남아시아 지역전문가 양성사업
6. 학회지 및 기타 도서 간행
7. 기타 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법인의 회원은 본 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고 정관이 정하고 있는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구분) 본 법인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 가. 대학교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동남아시아 지역연구 및 이에 관련된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전임강사급 이상의 자
  - 나. 공·사립기관 또는 연구소에서 동남아시아 지역에 관련된 업무 및 연구에 종사하는 자
  - 다. 동남아시아 지역연구에 관련된 박사학위 소지자
  - 라. 단 본 법인의 회원이 된 이후 신분의 변화가 있더라도 회원의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본 법인의 회원 자격에 포함되지 않으나, 본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사업에 협력하는 개인으로 한다.
3. 기관회원

국내외 기관으로서 본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법인의 발전에 기여하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으로 한다.

#### 4. 준회원

준회원은 대학원 석사 또는 박사과정에서 동남아시아 지역연구 및 이에 관련된 학문을 연구하는 자로서 본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7조. (회원의 가입 및 선정) 본 법인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회원 자격을 갖게 된다.

##### 1. 정회원

- 가. 정회원으로 입회하려는 자는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 나. 정회원 신청자에 대한 가입 여부는 상임이사회의 인준으로 결정한다.

##### 2. 특별회원 및 기관회원

특별회원 및 기관회원은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상임이사회의 인준으로 결정한다.

##### 3. 준회원

준회원은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가입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원은 본 법인의 회의 및 사업에 참가할 권리와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 2. 회원은 본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총회·상임이사회·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

제9조. (회원의 탈퇴) 본 법인의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원을 제출함으로써 탈퇴가 된다. 단, 기납 회비 및 기부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10조. (회원의 징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회원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을 포함한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 1. 본 법인의 명예에 손상을 입히거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자
- 2.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한 자
- 3.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제3장. 임 원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 1명
- 2. 부회장: 2-5명
- 3. 상임이사: 5명 이상 15명 이하
- 4. 이사: 70명 이내
- 5. 감사: 2명

제12조. (회장)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실무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회장을 둔다.

1. 회장은 전임 회장 임기 종료 전 1년 이내에 개최하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은 총회에서 정회원 3인의 추천을 받은 후보에 대해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를 득표한 자가 선출된다.
3. 회장은 당연직 상임이사로서 상임이사의 임무를 수행한다.
4. 회장은 사업수행의 필요에 따라 실무부서 및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 (임원의 자격 및 선출) 임원의 선출은 본 법인의 회원 중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선출한다.

1. 부회장 및 상임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2. 이사는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선임한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4. 선출된 임원을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원의 임기 중 사직 및 기타의 이유로 궐위된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후임자를 선출하고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여 총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회장의 유고시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회장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상임이사회·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본 법인의 사업과 재산에 관한 사무 및 회계 감사를 실시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했을 때 상임이사회·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5. 감사는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상임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장. 기 관

제16조. (총회) 총회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인은 최고의결기관으로서 회원으로 구성된 총회를 둔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3. 정기총회는 매년 1회 2월에 개최한다.
4.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0인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된다.
5. 총회의 소집은 법률 및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6. 총회는 본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각 회원은 평등한 의결권을 행사한다.
7. 총회 의사록 공증에 관한 행위는 회장에게 위임한다.

제17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4.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의장 또는 회원이 의결권이 없다.
  - 가. 법인과 의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 나.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18조. (이사회) 이사회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회장 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제19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2. 업무의 집행과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20조. (상임이사회) 상임이사회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상임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된다.
2. 상임이사회는 회장 또는 재적 상임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 상임이사회는 재적 상임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제21조. (상임이사회의 의결사항)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의 가입과 선정에 관한 사항
2. 임시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4.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일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

제22조. 본 법인의 목적과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산하에 부설 연구기관을 둘 수 있으며, 부설 연구기관의 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부설 연구기관의 기능과 조직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5장. 재산 및 회계

제23조. (출자) 본 법인의 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행한다.

1. 회비
2. 출연금품
3. 찬조금 및 기부금
4. 발간물 판매수익 및 기타수익금
5. 단, 회비의 액수, 출연금품, 찬조금 및 기부금의 접수에 관해서는 상임이사회가 결정한다.

제24조. (재산) 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 가. 본 법인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된 재산
  - 나. 기본재산으로 지정하여 출연된 재산
  - 다. 상임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의결한 재산
2. 본 법인의 기본재산은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적 상임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그 일부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3.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의 원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5조. (경비의 지출) 본 법인의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출한다.

제26조. (재산의 관리) 본 법인의 자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임이사회가 정한 관리방법에 따른다.

제27조. (잉여금의 처리)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시킨다.

제28조. (예산 및 결산) 본 법인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2. 본 법인의 매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차년도에 실시할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3. 본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감사의 검토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다음 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5. 본 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kaseas.org>)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 제6장. 사업

제29조. (학회지 발간) 본 법인은 연 4회(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 학회지를 발간

한다.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2.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구성한다.

제30조. (기타 사업) 본 법인의 목적에 관련하여 제1장 제4조에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각종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제7장. 정관의 변경 및 법인의 해산

제31조. (정관의 변경) 본 정관은 상임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를 개정할 수 있다.

제32조. (해산) 본 법인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결의할 수 있다.

제33조. (잔여재산의 처리) 본 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 부 칙

1.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며, 그 외의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3. 본 정관은 2003년 12월 13일 제정되었음.
4. 본 정관은 2005년 8월 25일 임시총회에서 개정되었음.
5. 본 정관은 2007년 2월 24일 정기총회에서 개정되었음.
6. 본 정관은 2009년 9월 26일 임시총회에서 개정되었음.
7. 본 정관은 2012년 2월 24일 정기총회에서 개정되었음.
8. 본 정관은 2013년 4월 26일 임시총회에서 개정되었음.
9. 본 정관은 2019년 12월 20일 임시총회에서 개정되었음.


## 사단법인 한국동남아학회 정관 신구조문대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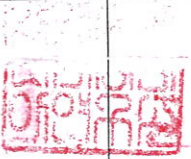

조항	기존	개정
제1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동남아연구소(KISEAS: Korean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이하 본 법인)라 칭한다.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동남아학회(KASEAS: Kor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Studies, 이하 본 법인)라 칭한다.
제3조	민간외교	공공외교
제4조		6. 학회지 및 기타 도서 간행 (추가)
제6조 2항	특별회원은 본 법인의 회원 자격에 포함되지 않으나, 본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사업에 협력하는 개인 또는 기관으로 한다.	특별회원은 본 법인의 회원 자격에 포함되지 않으나, 본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사업에 협력하는 개인으로 한다.
제6조 3항	3항 (번호변경)	4항
제6조 4항		삭제
제6조 5항	5. 협력회원 (associated member) 정회원 자격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내외국인 또는 동남아시아 지역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기관으로서 본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법인의 발전에 기여하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기관으로 한다.	3. 기관회원 국내외 기관으로서 본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법인의 발전에 기여하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으로 한다.
제6조 6항	객원연구원 (visiting fellow) 동남아시아 지역연구 관련자로서 한정된 기간 동안 본 법인에 소속되어 동남아시아 지역연구를 수행하는 자로서 본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삭제
제7조 1항	정회원 나. 정회원 신청자에 대한 가입 여부는 본 법인의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정회원 나. 정회원 신청자에 대한 가입 여부는 상임이사회의 인준으로 결정한다.
제7조 2항		삭제
제7조 3항	3. 특별회원 및 협력회원 특별회원 및 협력회원은 정회원 3인의	2. 특별회원 및 기관회원 특별회원 및 기관회원은 정회원 3인의

조항	기존	개정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인준으로 결정한다.	추천을 받아 상임이사회의 인준으로 결정한다.
제7조 4항	4항 (번호변경)	3항
제7조 5항	객원연구원 객원연구원은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가입신청하고 소장의 승인으로 결정한다.	삭제
제8조 2항	회원은 본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	회원은 본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총회·상임이사회·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
제10조	(회원의 제명)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회원의 경우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할 수 있다.	(회원의 징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회원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을 포함한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 3항	3. 총회 등 본 법인의 공식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간 2분의 1 이상 결석한 자	삭제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1. 이사장 1인 2. 연구소장 1인 3.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 (이사장과 연구소장 포함) 4. 감사 2인 5. 본 법인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수를 둘 수 있다	(임원의 종류와 정수) 1. 회장: 1명 2. 부회장: 2-5명 3. 상임이사: 5명 이상 15명 이하 4. 이사: 70명 이내 5. 감사: 2명
제12조	(연구소장)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실무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구소장을 둔다.  1. 연구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2. 연구소장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3. 연구소장은 당연직 이사로서 이사의 임무를 수행한다. 4.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연구소장은 사업수행의 필요에 따라 실무부서 및 위원회를 둘 수 있다.	(회장)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실무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회장을 둔다.  1. 회장은 전임 회장 임기 종료 전 1년 이내에 개최하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은 총회에서 정회원 3인의 추천을 받은 후보에 대해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를 득표한 자가 선출된다. 3. 회장은 당연직 상임이사로서 상임이사의 임무를 수행한다. 4. 회장은 사업수행의 필요에 따라 실무부서 및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	1. 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2. 감사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1. 부회장 및 상임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2. 이사는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선임한다.



조항	기준	개정
	<p>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p> <p>3.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 중 이사회에서 선출한다.</p> <p>4. 선출된 임원을 주무관청에 보고한다.</p>	<p>3. 감사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p> <p>4. 선출된 임원을 주무관청에 보고한다.</p>
제14조 1항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	<p>(임원의 직무)</p> <p>1.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이사회 의 의장이 된다.</p> <p>2. 이사장의 유고시에는 연구소장이 이사장의 권한을 대행하고 연구소장의 유고시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장이나 연구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p> <p>3. 연구소장은 총회를 대표하여 법인의 실질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p> <p>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p>5. 감사는 본 법인의 사업과 재산에 관한 사무 및 회계감사를 실시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했을 때 이사회나 총회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p> <p>6.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p> <p>7. 고문은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p>	<p>(임원의 직무)</p> <p>1. 회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여 총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p> <p>2. 회장의 유고시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회장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상임이사회·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p> <p>4. 감사는 본 법인의 사업과 재산에 관한 사무 및 회계 감사를 실시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했을 때 상임이사회·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p> <p>5. 감사는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상임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p>
제16조 4항	임시총회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0인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된다.
제16조 6항	총회는 본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각 회원은 평등한 의결권을 행사한다.	총회는 본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각 회원은 평등한 의결권을 행사한다.
제17조 4항	회원의 가입 및 제명에 관한 사항	삭제
제17조 5-6항	5항 (번호 변경) 6항 (번호 변경)	4항 5항
제18조	<p>1. 본 법인의 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p> <p>2. 이사회는 이사장, 연구소장, 이사로</p>	<p>1.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p> <p>2. 이사회는 회장 또는 재적 이사 과반수</p>

조항	기존	개정
	<p>구성한다.</p> <p>3.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p> <p>4. 이사회는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이사장이 결정한다.</p> <p>5.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특별위원회를 둔다.</p>	<p>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p> <p>3.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p>
제19조	<p>(이사회의 의결사항)</p> <p>1.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p> <p>2.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p> <p>3. 본 법인의 정관에 관한 사항</p> <p>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p>	<p>(이사회의 의결사항)</p> <p>1.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p> <p>2. 업무의 집행과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p> <p>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p>
<p>제20조</p> 		<p>(신설)</p> <p>(상임이사회) 상임이사회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p> <p>1. 상임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된다.</p> <p>2. 상임이사회는 회장 또는 재적 상임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p> <p>3. 상임이사회는 재적 상임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p>
제21조		<p>(신설)</p> <p>(상임이사회의 의결사항)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p> <p>1. 회원의 가입과 선정에 관한 사항</p> <p>2. 임시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p> <p>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p> <p>4.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p> <p>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p> <p>6. 총회 및 이사회에 권한에 속하지 않는 일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p>
제22조	신설	<p>제22조. 본 법인의 목적과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산하에 부설 연구기관을 둘 수 있으며, 부설 연구기관의 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부설 연구기관의 기능과 조직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p>

조항	기존	개정
제23조	제20조. (출자) 본 법인의 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행한다. 1. 회비 2. 출연금품 3. 찬조금 및 기부금 4. 발간물 판매수익 및 기타수익금 5. 단, 회비의 액수, 출연금품, 찬조금 및 기부금의 접수에 관해서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23조. (출자) 본 법인의 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행한다. 1. 회비 2. 출연금품 3. 찬조금 및 기부금 4. 발간물 판매수익 및 기타수익금 5. 단, 회비의 액수, 출연금품, 찬조금 및 기부금의 접수에 관해서는 상임이사회가 결정한다.
제24조 - 제27조		제21조 -> 제24조로 변경 제22조 -> 제25조로 변경 제23조 -> 제26조로 변경 제24조 -> 제27조로 변경
제28조 5항	제25조 5항. 본 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a href="http://www.kiseas.org">http://www.kiseas.org</a> )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28조 5항. 본 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a href="https://www.kaseas.org">https://www.kaseas.org</a> )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6장		(신설) 제6장. 사업
제29조	 	(신설) 제29조. (학회지 발간) 본 법인은 연 4회(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 학회지를 발간한다.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2.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구성한다.
제30조		(신설) 제30조. (기타 사업) 본 법인의 목적에 관련하여 제1장 제4조에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각종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7장	제6장 (번호변경)	제7장
제31조	제26조 (정관의 변경) 본 정관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를 개정할 수 있다.	제31조 (정관의 변경) 본 정관은 상임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를 개정할 수 있다.

조항	기존	개정
	다.	
제32조	제27조. (해산) 본 법인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결의할 수 있다.	제32조. (해산) 본 법인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결의할 수 있다.
제33조		제28조 -> 제33조로 변경



**장관인**